

동두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

의 안 번 호	5-146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 및 일부 자구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지방의회”를 “동두천시의회”로 “지방의회의장”을 “시의회 의장”으로 변경하여 소관을 명확하게 함.(안 제3조제1항·제2항 및 제6조)
- 나.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제6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여 현행에 맞도록 함.(안 제3조제2항·제7조 및 제8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”를 “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방의회”를 “동두천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공포하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지방의회의 장”을 “시의회 의장”으로 하고, “지방의회규칙”을 “시의회규칙”으로 한다.

제7조 및 제8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기획감사실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기획감사실장 장 석 원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기획법무담당 김 홍 기
	담당자 성명 · 전화	배 윤 중 860 - 2054, 2055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조례) ①조례의 전문에는 <u>지방의회</u>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 ②<u>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</u>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<u>지방의회</u>의 의결을 얻은 뜻 및 <u>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</u>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는 뜻을 기재하고,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	제3조(조례) ① ----- <u>동두천시의회</u> 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 ----- ----- ②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<u>시의회</u>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<u>시의회</u>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공포하는 뜻을 기재하고 <u>시의회</u>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
제6조(번호) ① 및 ② (생략) ③<u>지방의회의장</u>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<u>지방의회규칙</u>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,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.	제6조(번호) ① 및 ② (현행과 같음) ③<u>시의회</u> 의장 ----- <u>시의회규칙</u> ----- -----
제7조(공포방법) 조례와 규칙등은 시보의 게재로써만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<u>시의회</u>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	제7조(공포방법) ----- ----- 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26조제6항 ----- ----- -----
제8조(공포일등) 조례, 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시보에 게재한 날로 한다. 다만, <u>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<u>시의회</u>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란에 게시된 날로 한다.	제8조(공포일등) ----- -----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<u>제26조제6항</u> ----- ----- -----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,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④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.

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.

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.

⑦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.

⑧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